##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27

발의연월일: 2024. 7. 23.

발 의 자:임오경・이기헌・김재원

박 정•진선미•한민수

박수현 • 부승찬 • 강유정

윤후덕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 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.

특히 2024년 6월, 제주도 내 고등학교 식당·여자 화장실 상습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은 피해자만 216명으로 추계되어 피해의 청소년 불 법촬영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음.

따라서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·학원·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 • 학원

·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제1항의 범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·학원·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	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
무) ①・② (생 략)	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
	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
	한 특례법」 제14조제1항의 범
	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
	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
	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으로부
	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
	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・학원
	•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
	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
	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<u>③</u> · <u>④</u> (생 략)	<u>④</u> ・ <u>⑤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
	과 같음)